

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성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5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0. 26

발 의 자 : 강성환 의원
김대현 의원
김태원 의원
박우근 의원
이태손 의원
임태상 의원
윤기배 의원
윤영애 의원
홍인표 의원

1. 제안 이유

- 코로나19 확산 등 교육환경의 위기와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학교 정의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함(안 제2조제2호)
- 나. 원격수업 기본계획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을 포함할 것을 규정함(안 제4조제2항제6호)

3. 참고 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<u>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3조(교육과정 등)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
제24조(수업 등) ② 수업은 주간(晝間)·전일제(全日制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·계절수업·시간제수업 또는 방송·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.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

제48조(수업운영방법 등)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 대상,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「평생교육법」

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,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~ ⑧ (생략)